

[별표 3]

기 술 자 인 정 신 청 서 류(제5조 관련)

가. 전기공사기술자인정신청서(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)

나.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(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) 및 재직 입증 서류

다.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소지자에 한함)

라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(학사 이상의 경우 학위취득사실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)

마. 참여 사업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
바.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
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사. 증명사진 2매

아.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